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16호, 2021.6.8. 공포, 2022.1.1. 시행)됨에 따라,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(안 제2조의2 신설)

- 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, 미성년자인 경우
- 2)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)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“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2. 미성년자인 경우
3.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</u> <u>서 “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</u> <u>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</u> <u>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</u> <u>견인인 경우</u> <u>2. 미성년자인 경우</u> <u>3.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</u> <u>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</u> <u>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 <u>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</u> <u>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</u> <u>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</u> <u>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</u> <u>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01